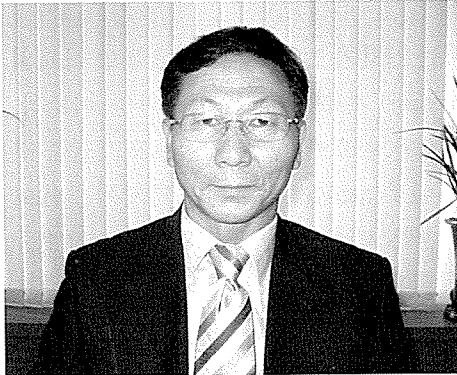


지식재산권에 관한 주요 국가의 정책 동향



법학박사 김주섭
현재 LG.Philips LCD 특허 업무 총괄
한양대학교 전자공학(학사)
Franklin Pierce Law Ctr(MIP 석사)
국민대학교 법학박사

제2절 EU 지식재산권 정책

1. EU 위원회의 역할

EU의 의사결정과정에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관여한다. 유럽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자신의 고유한 입법권과 위임된 입법권을 행사한다. 즉, 유럽연합의 행정부(집행부)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2000년 3월 리스본 각료이사회에서 위원의회 혁신정책을 채택하였는데 각료이사회에서 결정된 혁신전략에 따르면 “2010년까지 가장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지식기반경제를 이룬다.”⁹⁾는 목적아래 혁신정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주요한 연구개발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9) KEVIN G. RIVETTE AND DAVID KLINE, "REMBRANDTS IN THE ATTIC" 2000, p.1.

10) 과학기술개발을 근간으로 하는 유럽개혁정책의 실패라고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플랜의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에게 그 연구결과물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장 최선의 보호를 제공하여 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모범계약안을 구성하여 제시한다.

11) ERA프로젝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럽의 우수연구센터를 상호연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교류를 위한 Virtual Center를 설립한다. ② 대형 연구장비의 공동건설활용 ③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유럽차원의 연구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고 유럽 내 연구개발기관간의 협조체제구축 ④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정책수단 및 자원활용의 극대화:연구개발 간접지원제도, 특허제도, 위험자본 등의 EU차원의 정책수단수립 ⑤ 연구개발정책의 추진을 위한 유럽공동정책자료 조사분석체제의 구축 ⑥ 인력자원의 확충 및 교류의 활성화, 유럽차원의 과학기술이자 활용제도 도입, 여성과 청소년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의 진출 장려 ⑦ 서구 및 동구의 과학기술계, 기업 및 연구자들이 결집 ⑧ 외부과학기술자의 유럽유치의 강화 ⑨ 과학기술에 있어서 유럽공통의 사회 및 윤리적 가치추구

이러한 연구개발정책의 목표는 제5·6차 프레임워크 플랜(FP5, FP6)¹⁰⁾등 중장기 혁신정책으로 구체화되었고, “유럽 연구개발연합체(European Research Area)”의 실현이라는 정책적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¹¹⁾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내지 기반조성은 ERA의 중요달성 목적 중 하나이고 지식재산권은 상기의 환경 내지 기반으로서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유럽위원회의 현 유럽특허 제도의 시스템은 유럽특허청과 각 국가특허청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유럽연합의 관점에서 보면 유럽특허조약은 별론으로 하고 각 국가에서 허여받은 특허는 각 국가에서만 유효한 것이 원칙이었다.

전술한 현 제도는 유럽에서의 광범위한 특허의 이용을 위해서는 매우 고비용의 제도로서 유럽특허와는 다른 유럽연합 전체의 보편적인 특허제도를 만들어 내고자 노력하였다. 즉, 유럽연구개발연합체가 유럽연합의 차원에서 그 결과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유럽특허조약에서 제공하는 제한된 국가에 적용되는 유럽특허를 발전시켜 공동체특허로서의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

2. 유럽특허연합(EPC)¹²⁾

유럽은 1973년 유럽특허조약(EPC)의 채택으로 유럽공동체 내에서 부분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통일화 작업을 완성하였다. 이로 인해 유럽특허조약의 체약국들은 유럽특허청(EPO)에 출원함으로써 모든 체약국에서 효력을 가진 유럽특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화작업에도 불구하고 각 체약국에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는 절차상의 복잡함과 번역비용의 부담은 여전히 유럽특허시스템이 풀어야 할 과제이며, 각 체약국마다 독립된 사법제도의 운영으로 인해 이미 부여된 특허권에 대한 침해 및 유·무효와 관련된 분쟁에서 각기 다른 체약국에서 양립할 수 없는 판결의 모순, 저축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유럽공동체내의 기업 또는 발명가는 이러한 유럽특허에 대한 출원의 번역비용과 권리의 법적 불안정 때문에 미국, 일본보다 기술혁신을 위한 R&D 투자에 뒤쳐져 있게 된다.

이러한 유럽특허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럽이사회와 위원회 등 유럽의 관계기관 등은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중 주목할 만한 제도로는 공동체특허에 관한 규칙의 제도안(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the Community Patent)이다. 이 제도안의 주요 내용은 각 체약국에의 번역문 제출의 부담을 줄이는 것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관할이 집중된 사법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12) European Patent Convention 12th edition 2006년 4월, 1973년에 제정된 EPC는 2006년 4월 현재 12번째 개정되었다.

13) 유럽의 지식재산권정책 수행에 있어서 그 특징적인 것은 연구개발정책과 상호보완의 유지 EU 역내에서의 정책적 정보의 교류를 위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정책의 수행을 위한 여러 단계의 의견수렴과정·일반적 지식재산권 통계 이외의 정책관련 지수의 통계적·계량적 분석을 통한 지식재산권 지표의 활용(혁신지수판, 국가별 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전혀 새로운 시스템이 아니라 기존 유럽특허조약의 토대 위에서 유럽특허청을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관련 유럽특허조약의 수정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¹³⁾

유럽 Commission은 2000년 8월 1일에 공동체특허에 대한 Council Regulation에 대한 제정안을 채택하였다. 제정안은 새롭고 단일한 수단을 창설함으로써 유럽공동체 수준에서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시스템은 지역특허 및 유럽특허제도와 공존하여 발명자가 그들이 선호하는 방식의 보호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제정안의 목적은 접근 가능하고 매력적인 공동체를 창설하는 것이다. 특히 번역의 비용과 법률적 안정성에 대한 야심찬 제정안의 요점은 미래의 공동체특허에 대한 원칙과 1973년의 유럽특허조약의 공생을 도모하는 것이다. 공동체특허에 대한 규칙하에서는 유럽특허조약에 따라 유럽공동체 전 지역에 대해 유럽특허청이 부여한 특허는 공동체특허가 될 것이다. 이러한 해법은 유럽특허조약의 개정을 필요로 한다.

유럽특허조약의 개정 및 공동체특허에 관한 규칙의 제정은 향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많은 검토와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회원국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각 유럽기관들에서 적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유럽의 야심찬 공동체특허 시스템이 실현된다면 유럽공동체내의 기업들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럽에서 특허출원에 대한 일정한 장애가 제거되어 유럽공동체내의 출원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곧 유럽에서의 기술혁신이라는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유럽 Council은 유럽공동체내에서 특허권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시스템에 대해 준비 중이다. 그 방법으로는 유럽재판소(ECJ:European Court of Justice)에 특허침해와 특허의 유효·무효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집중시키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공동체특허법원을 따로 설립하여 유럽공동체 전역에서 효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국내특허 또는 유럽특허에 대한 관할권의 집중은 소송비용을 절감시키고 각국 법원간 판결의 모순으로 야기되는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3. 영국의 정책

영국 정부측은 영국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지식재산권 제도가 지속적으로 연구 및 기술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보기술(IT)의 중요성 증가에서 기인한 과학적 진보와 계몽연구와 같은 연구 분야에서의 과학적 진보가 부여한 지식재산권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그리하여 2001년에 정부는 특허, 저작권, 상표 및 디자인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의 전반적인 범위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14) <http://www.intellectual-property.gov.uk/ipac>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최근의 전략적 이슈를 식별하고 대응함에 대한 독립적인 자문을 제공한다.¹⁴⁾ 주요 핵심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첫째는 어떻게 지식재산권제도가 정부 목적에 가장 공헌할 수 있는가,
- 둘째는 지식재산권제도 실행에 따른 위험과 도전,
- 셋째는 지식재산 공급자와 소비자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의 필요를 조절하면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며 기술혁신을 장려하는 국제적인 지식재산권제도의 발달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 넷째는 경쟁문제를 포함한 IT 정책과 대중관심을 야기하는 쟁점들의 파급효과,
- 다섯째는 신기술의 영향,
- 여섯째는 어디에서 컨설팅 또는 연구를 필요로 하는가이다.

한편, 특허청은 DTI(영국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2001 과학 및 혁신전략에 규정된 다음의 주요사항에 주안점을 두었다.

- 일곱째는 기존 컨설팅과정의 검토 그리고 가장 넓은 관심 범위에 도달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의 조사,
- 여덟째는 가능한 공동체 특허의 도입,
- 아홉째는 특허권의 획득 및 시행을 위한 공식적 필요요건을 폐지하고 조화시키기 위한 국제적 조약의 비준,
- 열번째는 영국 지식재산권 제도를 자동화하기 위한 지재권의 전자거래 및 IT에의 투자를 위한 범세계적 시스템의 조기 도입추진과
- 열한번째는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하여 소기업서비스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이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갖게 함이다.

이 보고서의 수행기간 동안 특허청은 2002년 4월 30일에 조사를 마치면서 유예기간에 관한 공공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개인발명가, 학술관계자, 대기업 및 소기업 관계자, 지식재산권 전문가 등등으로부터 69개의 응답을 받았다. 이 쟁점과 관련하여, 통상산업부(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와 특허청은 참신한 아이디어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기록을 제공하며 지식재산을 어떻게 특허화하고 보호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담은 “혁신업무일지”를 출판하였다.¹⁵⁾

특허청은 또한 AURIL¹⁶⁾, Universities UK¹⁷⁾들과 공동 제휴하여 지식재산 관리라는 주제로(대학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가이드)된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더 넓은 수준에서, 정부는 또한 IP이슈의 사용 및 이해를 장려하기 위한 전용 온라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¹⁸⁾ Baker 보고서¹⁹⁾의 주요 조사결과 중의 하나에 따라, 영국 정부는 PSREs(공공부분 연구 조직)에서 연구 및 혁신과의 결합을 지원하는 추진정책을 발표하였다. 특히, 연구의 통상적인 이용을 추구하지만 지식재산권 관리의 향

15) <http://www.Innovationlogbook.gov.uk>

16) AURIL, (the Association for University Research and Industry Links)은 대학과 기업간의 연구와 기술이전 관련활동에 관련된 파트너쉽을 발전시키고자 설립된 단체이다.

17) 'Universities UK'는 영국 대학들의 협의체로서 타 교육 분야, 산업정부 등과의 일반적인 관계를 갖는다.

상도 또한 강조되고 있다.

그 주요 대책을 보면, 정부의 IT 소유 및 관리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발행(2001년 2월 발행); 공공 연구소 과학자들이 그들의 연구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 관리 코드(Civil Service Management Code)의 변경(예를 들어, 스핀아웃 기업의 자산을 통해); PSRES의 직원에 대하여 새로운 인센티브 가이드의 발행에 따른 후속 홍보 캠페인²⁰⁾ 씨드(Seed) 투자에 대한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연구협회 기관과 NHS 등의 PSRE에 겨냥하여 사업화한 IT에 대한 새로운 펀드에 £ 1 million(EUR 1.67 million)을 할당하였다. 후자는 부서간 행동 계획의 시금석을 이루며²¹⁾, 이는 연구결과물을 이용하는 사업 중에서 PSRE를 지원하려는 일련의 대책을 나타낸다. 그 행동계획은 Baker 보고서에 대한 영국 정부 답변에 제시되어 있다.

4. 독일의 정책

독일에서의 지식재산권 이용의 장려는 입법 분야(IT규정)와 진흥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 혁신 정책으로 제시된다. 2개의 주요 새로운 발전은 2002년에 있었다.

첫째, 고등교육기관의 연구 활동의 결과물인 발명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는 고등교육기관 연구원의 독점권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Arbeitnehmerfindungsgesetz", §42)의 개정에 의해 2002년 2월에 폐지되었다. 이른바 "대학교수들의 Hochschullehrerprivileg"는 특허의 성공적인 사업화에 필수적인 정보, 경험, 및 재정의 전반적인 부족으로 인해 사업화에 장애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대학 교수에 의해 출원된 특허의 개수가 상당히 증가해도 사업과 연관된 결과는 미미한 것으로 가정된다. 상기 개정법에 의하면, 발명의 지식재산권은 대학에 귀속되나 발명자는 발명의 사업화로 인한 일정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고등교육기관과 다른 공공 연구기관이 그들 기관에서 IP의 사업화를 개선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병행대책으로서 도입되었는데 이른바 '사업화 이니셔티브' 인 그 대책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a. 공공 연구기관에 특허획득 및 사업화를 위한 전문적인 인프라 구축,
- b. 공공 과학기관의 연구 결과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 이용의 장려,
- c 지식재산권 분야의 추가 교육 확충 및
- d. 공공 과학기관 내 사업화 부서들의 네트워크 구축.

18) <http://www.intellectual-property.gov.uk/>

19) Creating Knowledge-Creating Wealth, Realizing the Economic Potential of Public Sector Research Establishments, Published 1999, www.hm-treasury.gov.uk/docs/1999

20) Good Practice Guidance for PSRES and Staff Incentive Schemes(July 2000)

21) See Cunningham, P.N and Boden, J.M, Monitoring, updating and disseminating developments in innovation and technology diffusion in the Member States - The TREND CHART United Kingdom, Covering period: November 1999 - June 2000, July 1999

동 정책은 또한 지식재산권 방어를 위한 재원의 지원 등 기존 특허사무소와 서비스 제공자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특허 사업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나아가 특허 관련 지식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이벤트도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개인발명자, 중소기업, 공공과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은 특허획득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Fraunhofer Patent Bureau of German Research'에 의해 관리된다. 동 프로그램은 혁신적 발명자에 대하여 그 혁신에 대한 특허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대출을 제공한다. 특허청은 또한 신상품의 마케팅 및 판매를 지원한다. 기술 구현 능력과 고도의 경제적 가치가 선결 요건이다. 지원 형태는 무이자 정부대출로서 제공되고 그 대출은 수익이 날 때만 상환이 강제된다. 특허청은 이 경우 전체수익의 4분의 1까지를 받을 수 있다. 독일에는 거대한 특허정보센터 네트워크(INSTI)²²⁾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사내혁신 경영에 필수적인 과학 및 기술정보에 대한 접근을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특허정보 센터의 이러한 범국가적 네트워크에서는 원문에 대한 액세스, 기업 자체 정보 검색의 지원, 특허 및 다른 문헌의 복사, 변리사의 무료상담, 특허 정보센터의 서비스에 대한 강의와 같은 여러 유형의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INSTI네트워크에서는 다음의 주요한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지재권의 활용을 장려한다.

셋째, 발명(지식재산권 포함)의 사업화에 대한 새로운 과정을 도입하기 위해 고등 교육기관에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과학, 공학 및 경영 및 경영 관리학습의 교과과정에서 사업화 관련 know-how의 집적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사업화에 대한 강의 및 실무학습 (HEIs 또는 회사에서)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넷째, 'INSTI SME 특허 이니셔티브'는 지금까지 특허출원은 하지 않았지만 특허 시스템이 유용할 중소기업을 선정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특허 시스템의 이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 또한 이는 특허출원과 특허 시스템의 운영가치를 중소기업에 제시하기 위한 정보의 검색을 수월하게 한다.

다섯째, 'Akpat'는 고등 교육기관에서 특허획득 관련 경쟁력에 대한 개관을 설명하는 고등교육 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지원 인프라 등의 「인터넷 기반 플랫폼」을 제공한다. Akpat는 고등 교육기관에서의 다양한 상업화 인프라 도입을 시도한다.

여섯째, 'INSTI Innovation Action'은 혁신적 기업 및 신규 기업에게 그들의 혁신 활동을 최적화하고 영구적인 혁신 문화를 세우기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혁신 워크샵, 혁신 점검, 기술 평가 혁신 지도, 특허 검색 및 IP분야의 컨설팅 서비스, 신규 비즈니스 개척, 사업화 전략 및 마케팅 모니터링 등의 여러 개별조치가 제공된다.

다음호에 계속

발·특2006, 12

22) <http://www.insti.de>